# 키코(KIKO) 사태, 현황과 대책

2008년에 KIKO 등 외환 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의 환율 급등으로 손실 폭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파산이 이어졌다. KIKO 사태, 그 원인과 손실규모 현황, 정부의 대책에 대해 살펴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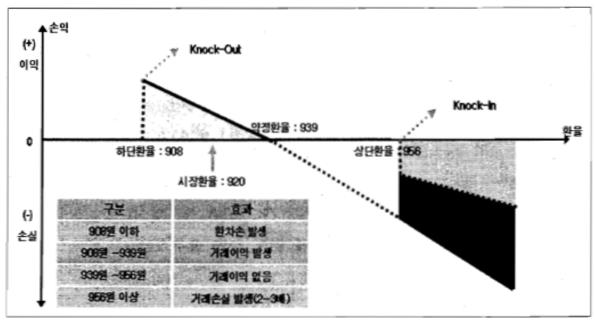
# 1. KIKO 개요

## ☐ KIKO란

- o KIKO(Knock In Knock Out)는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의 폭이 달라지는 외환파생상품
  - \* Knock-out 옵션은 환율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권리가 소멸, Knock-in옵션은 환율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권리가 발생하는 조건을 가진 옵션

### KIKO 특징

조건	특징
Knock-in 환율 이상 상승시	・ 상숭폭의 2~3배로 손실 확대될 수 있음
일정구간 안	• 환차손을 보상받으면서 환이익도 향유 가능
Knock-out 환율 이하로 하락시	• 계약소멸로 환차손에 노출될 수 있음



### KOKO의 손익구조

출처: 중소기업청 '중소기업 자금관련 현안보고'(2008.9.)

### □ KIKO의 위험성

- 환율이 약정범위 중 상한선인 Knock In 환율 위쪽으로 올라선 경우 계약금액의 두 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행사환율로 매도<sup>1)</sup>해야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음에도 손실이 발생
  - \* 매도해야 하는 달러가 수출대금의 두 배가 되면서 큰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
- o 또한 하한선(Knock Out) 아래로 내려갈 경우 환율하락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
  - \* 단. 화율이 약정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화헤지?)가 가능

<sup>1)</sup> 또는 그 차액만큼 원화금액 지급

<sup>2)</sup> A사가 자사 제품을 수출한 후 3개월 뒤 5만달러를 받기로 했다. 이 때 3개월 후의 환율변화에 따라 원화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 3개월 후의 달러 선물을 택해 5만달러를 원화로 파는 계약을 하면 환차손이나 환차익을 피할 수 있다. 이를 '환해지'라 한다. (매경 경제용어사전)

## 2. 기업의 KIKO 피해 규모

- □ 기업의 KIKO 피해
  -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대・중소기업의 키코 손실 금액은 1조억원에 육박
     \* 39개 대기업 2,460억원, 480개 중소기업 7,200억여원
  - o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 '키코(KIKO)'에 가입했던 기업들의 추가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
    - \* 원·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오를시 키코(KIKO)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약 70%가 부도 위험에 처하는 것으로 조사 (중소기업중앙회, '08.9.25)
  - ㅇ 특히 대기업 보다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
    - \*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키코 피해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업체는 132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('08.9.21 현재)
    - \* 현재 국내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으로는 신한과 SC제일은행(전체 판매액수의 20.8%), 외환은행(17.36%), 씨티은행(16.6%) 등이 있음

# 3. KIKO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대책

- □ KIKO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
  - 당초 금융당국은 KIKO 피해 발생이 기업과 은행 간 사적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고 당국의 제재 범위가 아니라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
  - 흑자기업조차 부도를 내는 등 기업들의 피해규모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,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 동성 공급을 약속하는 등 키코 사태에 본격 대응키로 함

\* 강만수 기획재정부 전장관은 지난 9월 24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사계약 차원을 넘어 위기관리 차 원에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발언

〈KIKO거래 평가 (2008년 9월)〉

기관	평가
금융위 · 금감원	• 기업이 은행과 합의를 통해 체결한 사적계약이라는 점에서 KIKO 거래 자체에 대한 정부 개입은 곤란하나, 개별 계약 건별로 은행의 불충분한 위험고지 • 계약강요 • 왜곡된 환율 전망치 제공 등의 부당판매행위가 있었는지는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입장
공정위	<ul> <li>KIKO 거래는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기업과 은행간 유・불리가 달라지는 것으로, 사업자가 조건에 관계없이 유리한 계약내용을 정하는 '불공정 약관'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(7.24)</li> <li>다만, 은행들이 KIKO와 같은 고위험성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명시・설명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임</li> </ul>
중기중앙회	· KIKO손실은 은행이 파생상품 위험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익의 비대칭성(Knock-in시 2~3배 손실 발생)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발생(불완전 판매)

# □ 정부의 KIKO 대책

o 10월 1일 발표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대책을 필두로 중기청, 관 세청 등에서도 후속 대책을 마련

#### 〈KIKO 대책〉

#### KIKO 대책 주요 내용

####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대책 (정부, 10/1)

- ·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, 회생특례 자금을 확대(200→700억원)해 일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
- 한은 총액한도대출 및 국책은행 자금지원 확대, P-CBO 신규발행 등을 통해 신규 유동성을 약 4조3000억원 이상 확대하고, 신용보증지원 규모도 4조원 늘리기로 함

#### 유동성의 원활한 공급으로 중기 지원 (금융위원회, 10/6)

- · 시중은행의 외화유동성 문제에 대해 정부는 스왑시장과 무역금융 재할인 등을 통해 시중은행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시 외환보유액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함
- 또한 국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도 외자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
- · 은행들 역시 해외자산 매각, 국내 기업의 해외자금 유치 등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함

#### KIKO 가입 기업에 긴급 유동성 지원, 만기연장 시행 (중기청, 10/9)

- 환율급등에 따른 KIKO 가입기업의 손실 확대, 은행의 자금긴축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압박이 가중됨에 따라, 우선 연말까지 긴급한 자금수요 대응을 위해 3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결정
- \*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, 대출기간은 3년(거치기간 1년 포함, KIKO계약기간 등을 감안 탄력운영)
- · KIKO가입 중소기업중 유동성 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(최대 18개월) 시행
- \* KIKO 가입 기업 중 정책자금이 지원된 업체는 64개사

#### KIKO 대책 주요 내용

- 또 2009년도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3,000억원을 KIKO 등 유동성 위기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, 자금수요를 감안 동 자금의 대폭적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
- ·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(12개)와 은행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환위험교육 프로그램 개발, 은행의 외환거래담당자 강사 활용, 수출중소기업 컨설팅 등을 통해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의 질도 제고

####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 (관세청, 10/13)

· KIKO 투자로 일시적 자금경색을 앓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등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예정

#### 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 (금융위원회, 10/14)

- ·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1일 발표한 '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'의 후속조치로 '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' 시행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확정·시행할 계획
- · 채권은행들은 키코 등 손실금의 대출전환, 보유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, 원금·이자 감면, 이자율 인하, 출자 전환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나섬
- · 신용등급이 가장 좋은 A등급 기업은 개별 채권은행이 자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, B등급 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게 채권은행 협의회를 소집해 공동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함
- · 키코 손실기업의 경우에는 '키코 계약은행 협의회'를 별도로 구성해 손실기업에 필요한 일괄·분할청산 등 손실처리 기준 및 지원방안을

#### KIKO 대책 주요 내용

마련하게 되며, 이후 '채권은행 협의회'가 기존의 공동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채권행사 유예방안 등 추가지원을 결정하게 됨

- 특히 키코 등의 손실로 흑자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보유채권의 유동화, CB(전환사채) • BW(신주인수권부사채) 이용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'키코 자문단' 구성해 은행과 기업에 자문을 제공할 계획
- · 금융위는 또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에 의해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질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이 간소화된 '유동성 지원 특별보증'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
- \*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에 대해 10억원 한도 내에서 60~70%까지 보증 지원하고, 키고 등 손실기업의 경우 20억원 한도 내에서 40%까지 보 증 지원해 주기로 함

#### 모태펀드 확대운용 등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 (중기청, 10/15)

- · 10월 1일 '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'에서 밝힌 것처럼 2008년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변경해 올해 모태펀드 출자목표를 상향조정
- \* 이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 사업규모도 하반기 예정된 당초 6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400억원이 증가
- · 벤처펀드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율을 확대해 연기금 등의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주고 벤처펀드 결성을 촉진
- \* 이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기존 30% 이내에서 40% 이내로 확대하고, 창업 초기 전문투자 등 정책목적성 펀드에 대한 출자비율도 10%씩 상향조 정해 최대 60%까지 지원하기로 함
- · 모태펀드 출자조합이 투자한 KIKO 피해기업에 벤처캐피탈이 공동 투자할 수 있도록 11월 중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
- \* 모태펀드 출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중 KIKO 피해기업은 15개로 피해금액은 약 1550억원으로 집계

#### KIKO 대책 주요 내용

### 기업 재평가 시스템 운영체계 (지식경제부, 10/20)

 지식경제부는 10월 1일 발표한 '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'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▲기업 재평가 시스템 구축 ▲유동성 지원 이행점검체계 구축 ▲중소기업 홍보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

#### 〈참고 문헌〉

기획재정부 (http://www.mosf.go.kr/)

금융감독원 (http://www.fss.or.kr/) : 'KIKO 거래현황 및 대책( '08.8.1)' 외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(http://www.bok.or.kr/)

중소기업중앙회 (http://stat.kfsb.or.kr/)

중소기업청 : 중소기업 자금관련 현안보고 (2008.9.)

'중소기업 '키코 쓰나미'··손실 1조6000억 넘어' (중앙일보, '08.9.21), '손실기업, 구제 가능한가' (08.9.26, 머니투데이)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